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06

제출년월일 : 2009. 10. 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악취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만 지원되던 환경보전기금을 노후 된 방지시설을 개선 및 교체 할 경우에도 지원함으로써 업체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시설개선으로 악취저감에 기여하고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악취를 개선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선하여 악취 저감효율이 10%이상일 경우에도 이자차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며,
- 환경관리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는 금액 중 이자차액 보조사업 금액의 한도액을 정하여 융자기금간의 형평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에만 지원하던 기금의 지원을 원활한 시설개선 유도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시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함(안 제4조1항 8호).
- 기금의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을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에서 설치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4조의2 제1항 제7호).
-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융자금액 지원기관별로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이자차액 보조사업 상한액을 정함(안 제4조의4 제2항).
-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해당시설 설치로 악취저감 효율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융자액 중 5억원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4 제4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8. 6. ~ 8. 26. (20일간)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8호 중 “설치”를 “설치 또는 개선”으로, “융자사업”을 “융자 및 이자차액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9호중 “제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7호 중 “설치”를 “설치 또는 개선”으로 한다.

제4조의4 제2항 중 “융자받을 경우”를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 까지”로 각각하고, 제4항 중 “제4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으로 하고, 제5항 중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을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며, 같은조 제5항을 제 6항으로, 제 4항을 제 5항으로 각각 하고,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악취를 개선하고자 에너지관리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폐열에너지회수설비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해당시설의 설치로 악취방지시설의 악취 저감 효율이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체가 부담 할 이자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환경기획담당”을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사업	8. ----- 설치 또는 개선-----융자 및 이자차액보조사업
9.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	9. ----- 제11조 -----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제4조의2(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7. ----- 설치 또는 개선 -----
제4조의4(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제4조의4(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4조의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악취를 개선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폐열에너지회수설비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해당시설의 설치로 악취방지시설의 악취저감 효율이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체가 부담 할 이자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 이내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

현 행	개 정 안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융자결정서를 첨부하여 융자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 -----.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① (생략)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환경기획담당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